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55

발의연월일: 2020. 9. 25.

발 의 자:소병훈·장경태·홍기원

박영순 • 인재근 • 조응천

임종성ㆍ허 영ㆍ송기헌

김윤덕 • 신정훈 • 진선미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스마트 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여 해당 지구 내에서만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에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의 수립, 주민의견의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 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된 후에도 스마트혁신사 업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을 수립·승인받아야 하는 절차가 존 재하기 때문에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과 관련된 절차를 삭제하고, 규제를 신속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절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스마트규제혁신지구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스마트혁신기술· 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기술·서비스와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 청할 수 있음(안 제2조·제23조, 제47조·제48조 삭제, 제49조의2 신설 등).
- 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해당 법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함(안 제36조의2 신설).
- 다.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의 관리·감독, 시행기간, 손해 배상책임, 허가등법령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스마트실 증사업의 실증기간 연장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53조, 제53조의 2·제53조의3 신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호를 삭제한다.

- 9.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신기술·신서비스의 활용 또는 융·복합을 통해 도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혁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말한다.
- 10. "스마트혁신사업"이란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제공·이용하기 위하여 제49조제1항에 따라 임시로 승인을 받은 사업을 말한다.
- 11. "스마트실증사업"이란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시험·검증하기 위하여 제5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사업을 말한다.

제23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의2의 제목 중 "위임·위탁"을 "위임·위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는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6조의2(공동출자법인에 대한 특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범 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제1항제6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 하 이 조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 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며,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 8.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9. 사업 범위, 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10. 예산 및 회계
-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2. 해산에 관한 사항
- 1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장의 제목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운영 및 특례"를 "스마트 혁신·실증사업에 대한 규제특례 등"으로 한다.

제47조 및 제4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혁신사업"을 "스마트혁신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해당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관할"을 "스마트혁신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이하 "시행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 중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은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가 속한 관할"을 "시행지역을 관할하는"으로, "스마트도시계획과 해당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의 내용"을 "스마트도시계획"으로 하고, 같은항 제1호 중 "주요 목적"을 "주요 목적, 시행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제7항 중 "스마트혁신사업계획(제6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로 하며, 같은 조제9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제10항 중 "승인"을 "작성 및 승인 등"으로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규제의 신속확인) ①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기술·서비스와 관련 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그 소관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소관 업무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등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을 포함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행정기관 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⑤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의 신속확인과 관련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처리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 외에 규제의 신속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제2항 전단 중 "승인신청 및 승인과 절차"를 "승인 및 변경 등"으로, "제49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제51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을"을 "제49조, 제51조 및 제52조(제51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의 제공 또

는 이용"은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의 시험 또는 검증"으로"를 "'시행지역"은 "실증지역"으로,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의 제공 또는 이용"은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의 시험 또는 검증"으로"로 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중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시행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와"를 "시행지역과"로 한다.

제52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시행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할"을 "시행지역을 관할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시행지역"으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관리 등)"을 "(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감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관할"을 "시행지역을 관할하는"으로, "이 조"를 "이 조 및 제53조의2"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전이라도 허가등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결과에 따라 허가등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입증된경우 그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를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시작하여야 하고,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관계기관"을 "시행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및 관계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이전에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규모, 사업여건"을 "사업규모, 여건"으로, "관할"을 "시행지역을 관할하는"으로,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장과 협의하여 인적·물적 손해배상에 대한 방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스마트혁신사업자는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허가등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 ⑧ 그 밖에 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감독, 시행기간의 연장, 손해배 상책임, 허가등법령의 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8장에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3조의2(스마트실증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스마트실증사업을 공동으로 관리·감독하고, 관계기관의 장 및 스마트실증사업자는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 및 개인정보의 보호·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한다.
 - ② 스마트실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 및 실증 결과를 실증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이 만료되

- 기 전이라도 허가등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결과에 따라 허가등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입증된 경우 그 법령 정비를 시작하여야 하고,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스마트실증사업자는 승인된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의 시행에 따라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스 마트실증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⑤ 스마트실증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스마트실증사업자의 사업규모, 여건 등을 이유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증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인적·물적 손해배상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스마트실증사업계획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실증사업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기술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 탁할 수 있다.
- ⑦ 스마트실증사업자는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에 대한 허가등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 8) 그 밖에 스마트실증사업의 관리·감독, 손해배상책임, 허가등법

령의 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3조의3(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 등) ① 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실증기간 만료 전에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실증기간을 연장하려는 스마트실증사업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증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스마트실증사업자는 실증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규제특 례 적용결과 및 실증 결과를 첨부하여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국토교 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요청에 따라 허가등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시작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시작된 경우(제6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시작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한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활용하는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하여 제49조에 따른 승인을 할 수 있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한 경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실증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 ⑨ 그 밖에 실증기간의 연장, 허가등법령 정비의 요청·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53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제56조제4호 중 "제53조제7항"을 "제53조제7항 및 제53조의2제6항"으로, "임직원(제5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임직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 받은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8. (생 략)
- 9. "스마트혁신사업"이란 스마 트규제혁신지구에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스마트혁신 기술・서비스를 제공・이용하 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10. "스마트실증사업"이란 스마 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혁 신기술 · 서비스를 시험 · 검증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11. "스마트규제혁신지구"란 도 시문제 해결 및 혁신산업 육 성을 위하여 규제특례를 통해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 실증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47조에 따라 지 정된 지역을 말한다.

정

아

1. ~ 8. (현행과 같음)

개

- 9. "스마트혁신기술 · 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술 및 스마트도 시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신기 술·신서비스의 활용 또는 융 •복합을 통해 도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혁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말 하다.
- 10. "스마트혁신사업"이란 스마 트혁신기술·서비스를 제공· 이용하기 위하여 제49조제1항 에 따라 임시로 승인을 받은 사업을 말한다.
- 11. "스마트실증사업"이란 스마 트혁신기술 · 서비스를 시험 · 검증하기 위하여 제50조제1항 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일정기 간 동안 규제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사업을 말한다.

- 12.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 <삭 제> 란 스마트도시기술 및 스마 트도시서비스를 개선하거나 <u>신기술 · 신서비스의</u> 활용 또 는 융・복합을 통해 도시민 의 삶의 질의 향상과 혁신산 업 육성에 기여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말한다.
- 제23조(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① 저 스마트도시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스마트도시위워회(이하 "위워 회"라 한다)를 둔다.
 - 1. ~ 8. (생략)
 - 9.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 • 변경 • 지정해제에 관한 사 항
 - 10.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의 승인 • 변경에 관한 사항
 - 11. 12. (생략)
 - ② ~ ⑤ (생 략)
- 제34조의2(권한 및 업무의 위임 제34조의2(권한 및 업무의 위임 ·위탁) ① ~ ③ (생 략)

<신 설>

세23조(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1

1. ~ 8.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 11. 12. (현행과 같음)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위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2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신 설>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받은 기관·단체는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재위 탁할 수 있다.

제36조의2(공동출자법인에 대한 특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하 이조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며, 법인의 정관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 함하여야 한다.

<u>1. 목적</u>

<u>2. 명칭</u>

제8장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운영 및 특례
제47조(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의장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이시행될 수 있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하여지정・고시하여야 한다.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 또는 출연금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7. 임직원에 관한 사항8.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9. 사업 범위, 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10. 예산 및 회계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2. 해산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제8장 스마트혁신・실증사업에

대한 규제특례 등

<삭 제>

- 제안사업의 시행지역(국토교 통부장관이 공모한 경우에 한 정한다) 중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 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역
- 2.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시범도시 중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역
- 3.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 의5에 따른 성장동력의 발굴 ·육성 시책에 따라 스마트도 시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지역
-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스마트규제혁신 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명칭・위치・면적
- 2.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

 필요성 및 기대 효과

- 3.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 도입 할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에 관한 사항
- 4. 스마트규제혁신지구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 되는 사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의 지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 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 ③ 민간기업등은 관할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 각 호 의 사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 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실 증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스마트 규제혁신지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제안내용을 검토하 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 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지 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으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

- 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 획을 확정하고 스마트규제혁신 지구를 지정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구를 지정한다.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스 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 ① 제3항에 따라 민간기업등이 제안한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이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에 포함된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스마트

규제혁신지구계획이 확정된 때에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4 9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8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스마트규 제혁신지구를 직접 지정하거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 트규제혁신지구계획을 공고하 고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 어야 한다.
-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 지구를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① 그 밖에 스마트규제혁신지

<u>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u>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변경·지정해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할 지방자기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 및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마트규제혁 신지구계획 및 스마트규제혁신 지구 지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 · 제2항 · 제4항 · 제5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다 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 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 의(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 협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 및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 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 니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삭 제>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 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할수 있다.

- 1.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경우
- 2.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 마트혁신사업과 스마트실증사 업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 는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관할 지방자기단체의 장과의 협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스마트 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

는 제3항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 신지구계획 및 스마트규제혁신 지구를 변경하거나 스마트규제 혁신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민간기업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의 스마트현신사업과 스마트실증사업은 시행이 중지된다. 다만, 스마트혁신사업과 스마트실증사업의 시행중지에 따라 해당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적용이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유지할 수 있다.

① 그 밖에 스마트규제혁신지 구계획·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변경·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스마트혁신사업 등) ① 스 제49조(스마트혁신지구에서 스마트 혁신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및 제9조의2에 따른 민간기업등을 포함한다. 이하 "스마트혁신사업자"라 한 다)는 해당 사업이 다음 각 호 ------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업 ------ 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라 한다) 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1. • 2. (생략)

②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전에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관할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스마트혁 신사업계획을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 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및 조 치요구사항과 스마트혁신사업 자의 조치계획을 스마트혁신사업 업계획에 포함하여 제1항에 따 른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세49소(스마트역신사업 등) ① <u>스</u>
마트혁신사업
1.•2. (현행과 같음)
1. 2. (1.67) E D /
2
2
② <u>스마트</u>
②스마트 혁신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이
②스마트혁신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이하 "시행지역"이라 한다)을 관

- ③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스마트혁신사업계 획은 해당 스마트규제혁신지구 가 속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계획과 해당 스마트 규제혁신지구계획의 내용을 고 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1. 스마트혁신사업의 <u>주요 목적</u> 및 내용
- 2. ~ 6. (생략)
- ④·⑤ (생 략)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한다.이경우해당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같은 법제72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수있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⑦ -

3	 		
	 시행지	역을	관할
하는	 	<u>스</u> ㅁ	<u> </u>
<u>시계획</u>	 		
.			

- 1. -----<u>주요 목</u> <u>적, 시행지역</u>-----
- 2. ~ 6.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삭 제>

⑦ -----

따라 신청된 스마트혁신사업계 획(제6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 한다)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 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 한다.

- ⑧ (생략)
- ① 그 밖에 스마트혁신사업계 획의 <u>승인</u>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스마트혁신사업계
획에

 ⑧ (현행과 같음)

 <삭 제>

- ⑩ -----작성 및 승인 등-----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사항이 다른 기관

- 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그 소관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등에 필요한 요건 및절차 등을 포함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관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⑤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의 신속확인과 관련 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처리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

제50조(스마트실증사업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및 승인과 절차에 관하여는 제49 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제51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으 "스마트실증사업계획"으로,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스마트실증사업자"로, "스마트 혁신기술·서비스의 제공 또는 이용"은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의 제공 또는 이용"은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의 제공 또는 기술의 시험 또는 검증"으로 본다.

제51조(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9조제7항에 따라 스마트 혁신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조건을 부여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항	외	에	규정	의	신속	후확	·인 o]	필
	요 현	한	사	항은	대	통령	령	으로		정
	한 I	<u> </u>								
제	503	조(:	스ㅁ	- 투실	실증	사업		등)		1
	(현	행.	과	같음)					
	2					<u>승</u>	인	및	<u>변</u>	<u>경</u>
	등-				<u>z</u>	11492	조,	제	51	<u>조</u>
	<u>및</u>	저	52	조(저	512	조제2)항	단	서	는
	제 9	리힌	나나	<u>)를</u>						
			-"入] 행기	[]역	"은	"소	실증기	۲) ⁽	멸"
	<u> </u>	쿧,	" <	스마J	트혁	신기	술	• 서	비]	스
	<u>의</u>	제	공	또는	- 0]용"	은	"스	마	<u>트</u>
	혁/	<u>신</u> フ	술	• 서	비스	:의	시	험	또	<u>는</u>
	검	증"-	<u> </u> 도							
제	513	조(:	스ㅁ	ᅡ트형	부신	사업	계	획의		승
	인 :	기준	<u> </u>	흥) (1 -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스마트혁신사업이 <u>해당 스마</u> <u>트규제혁신지구</u>에서 국민의 건강·안전 및 환경, 개인정 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에 미치는 영향
- 3. 스마트혁신사업이 <u>해당 스마</u> <u>트규제혁신지구와</u> 인근에 미 치는 사회적·경제적 효과
- 4. ~ 6. (생략)
- ② ③ (생 략)
- 제52조(스마트혁신사업의 변경· 조치·취소 등) ①·② (생략)
 - ③ 제2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 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범위에서 해당 스마트혁신사업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스마트 규제혁신지구계획도 함께 변경 된 것으로 본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 중에 해당 스마트큐제혁신지구에서 국민의 건강·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의

 1. (현행과 같음)	
1. (현용의 필요) 2시행지역-	_
2. <u>/\\\\\\\\\\\\\\\\\\\\\\\\\\\\\\\\\\\\</u>	
	_
	_
3 <u>시행지역</u>	
과	-
4. ~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52조(스마트혁신사업의 변경ㆍ	
조치・취소 등) ①・② (현행괴	ŀ
같음)	
<삭 제>	
4	-
<u>시행지역</u> -	-
	-
	_

안전한 보호·처리 등에 위해 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 5. (생략)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u>관할</u>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스마트혁신사업의 승인을 취소할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유에해당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한다.
- 1. 2. (생략)
- 3. 제4항 각 호에 따른 조치에 도 불구하고 <u>해당 스마트규</u> 제혁신지구에서 국민의 건강 · 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에 관한 위험·위해를 예방·제거하지 못한 경우
- 4. (생략)
- ⑥ (생략)

제53조(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전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스

1. ~ 5. (현행과 같음)
⑤
시행
지역을 관할하는
<u>.</u>
1. • 2. (현행과 같음)
3
<u>시행지역</u>
4.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53조(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ㆍ
<u>감독 등)</u> ①

마트규제혁신지구의 관할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하 <u>이 조</u>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스마트혁신사업에 관하여 공동 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 및 스마트혁신 사업자는 국민의 건강·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 호·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 ② 관계기관의 장은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기간이 만료되기전이라도 허가등법령을 정비할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결과에따라 허가등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입증된 경우 그 법령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③ 스마트혁신사업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 특례 적용 및 사업시행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u>④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u> <u>④ 스마트혁신사업자는 해당</u>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이 조 및 제 <u>53</u>
조의2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u>전에 해당 사업에 대</u>
한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시작하
여야 하고, 허가등법령의 정비
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행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
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기
관
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기

 따라 법령 정비를 완료한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허가등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야 한다.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

- ⑤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승인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시행에 의하여 인적·물적 손해가 발 생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스마트혁신사업자 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 ⑥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스마트혁신사업자의 규모, 사업여건 등을 이유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u> </u>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
<u>야 한다.</u>
⑤
따라
6
<u>대통령령으로</u>
<u>사업규모, 여건</u>
시행지역을 <u>관</u>
<u>할하는장과</u>
협의하여 인적·물적 손해배상
에 대한 방안

을 받아야 한다.

⑦ (생략)

8 스마트혁신사업자는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허가등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 야 한다.

<신 설>

⑦ (현행과 같음)

⑧ 그 밖에 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감독, 시행기간의 연장, 손해배상책임, 허가등법령의 정 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2(스마트실증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스마트실증사업을 공동으로 관리·감독하고, 관계기관의 장및스마트실증사업자는 국민의건강·안전, 환경 및 개인정보의 보호·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한다.

② 스마트실증사업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 특례 적용 및 실증 결과를 실 증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기 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허가등법령

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결과에 따라 허가등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입증된 경우그 법령 정비를 시작하여야 하고,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스마트실증사업자는 승인된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의 시행에 따라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스마트실증사업자 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⑤ 스마트실증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스마트실증사업자의 사업규모, 여건 등을 이유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증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장과 협의하여 인적・물적 손

<신 설>

해배상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스마트실증사업계획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실 증사업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전문인력·기술을 갖춘 기 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① 스마트실증사업자는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에 대한 허가등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 야 한다.
- ⑧ 그 밖에 스마트실증사업의 관리·감독, 손해배상책임, 허 가등법령의 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3(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 등) ① 스마트실증사업의 의실증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면, 실증기간 만료 전에 허가등법경의 정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2년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실증기간을 연장하려는 스마트실증사업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증기간이 만료되기 2개 월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스마트실증사업자는 실증기 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규제특례 적용결과 및 실증 결 과를 첨부하여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 청할 수 있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요청에 따라 허가등법 령 정비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허가 등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허가 등법령의 정비를 시작하여야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이 허가등법령 의 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고 판단하였으나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 혁위원회에 규제정비를 요청하 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시 작된 경우(제6항에 따라 규제 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허가 등법령의 정비를 시작한 경우 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 따 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 니한 스마트혁신기술 · 서비스 를 활용하는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하여 제49조에 따른 승인을 할 수 있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 에 따른 요청을 한 경우 제4항 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절 차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실증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50 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② • ③ (생 략)

<신 설>

- 제5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저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 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 3. (생 략)
 - 4. <u>제53조제7항</u>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및단체의 임직원(제50조제2항

⑨ 그 밖에 실증기간의 연장,
허가등법령 정비의 요청ㆍ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55조(과태료) ①
1. ~ 4. (현행과 같음)
5. 제53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
<u>거나 인적·물적 손해에 대</u>
한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
<u>니한 자</u>
②·③ (현행과 같음)
제5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
1. ~ 3. (현행과 같음)
4. 제53조제7항 및 제53조의2제
<u> 6항</u>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임직원
<u> 함한다)</u>	